광주평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정정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평동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2. 04. 13.

광주광역시장

평동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여 혁(변경)

- ◎ 승인 1995. 2. 4 :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5-16호
- ◎ 변경 2001. 10. 18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1-125호
 - 입주대상업종에 물류업 추가
 - ·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3201-63202
 -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60312
 - 물류업종 입주범위 는 총량제로 하고 총량범위는 당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 면적의 5% 이내
- ◎ 변경 2002. 12. 10: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2-126호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97호(2001.8.17)호에 의거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추가지정된 산업시설구역 191,735㎡를 제척
 - 한전 변전소 부지 면적 정정 : 9,917.4㎡ → 9,917.3㎡
 - 용도구역변경
 - · 주거용지(49.321.8㎡)·버스회차장(1.948.7㎡) → 산업시설구역
 - · 한전 변전소 → 지원시설구역
- ◎ 변경 2004. 5. 1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4-28호
 - 입주대상 업종 물류업 중 보관·창고업에 기타창고업(63209) 추가
- ◎ 변경 2007. 6. 1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7-65호
 - 일반지방산업단지 산업용지 분할기준
 -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 입주자격
 - 입주제한업종의 명문화
 - 용도구역 변경
- ◎ 변경 2008. 6. 2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8-66호
 - 물류총량범위확대(5%이내 →9%이내)
 -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
- ◎ 변경 2019. 5. 21.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9-127호
 - 입주대상업종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추가
- ◎ 변경 2021. 9. 14.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45호
 - 광주평동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 ◎ 변경 2021.12. 8.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445호
 - 폐기물처리계획 변경(매립·소각시설 설치 → 매립시설 설치)
- ◎ 변경 2022. 4. 13.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2-98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45호 정정고시

1. 산업단지 개요

가. 조성목적

- 국토 서남권 개발기지의 효과적 수용
- 지방공업용지 수요의 대처와 고용증대에 의한 지역경제 육성
- 송정생활권 개발촉진으로 도시 공간 구조개선
- 시가지 부적격업체를 수용하여 도시환경 개선

나. 추진경위(변경)

- 1990. 5. 28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 1991. 5. 15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변경결정
- 1991. 7. 5 지방공업단지 지정
- 1991. 10. 5 평동지방공업단지개발 기본계획 승인
- 1991. 12. 19 평동공단1차단지 환경영향평가 승인
- 1991. 12. 31 평동공단1차단지 개발사업 실시설계 승인
- 1993. 6. 26 2차단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준공
- 1993. 7. 5 개발계획 1차변경(사유:2차단지 부분반영)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3-11 9호」
- 1993. 3. 8 착 공(1차단지)
- 1993. 9. 2 평동지방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변경)승인
- 1995. 4. 15 개발계획 2차변경(사유:외국인전용단지제척) 「광주광역시고시 제1995-16호」
- 1995. 8. 26 조성공사 완료(1차단지)
- 1996. 4. 9 조성공사(1차단지) 준공인가
- 1997. 3. 26 개발계획 3차변경(사유:1차단지 확정측량 및 진입도로부분 포함)「광주광역시고시 제1997-39호」
- 1997. 8. 25 2차단지 실시설계 착수
- 1998. 6. 20 2차단지 실시설계 준공
- 1999. 9. 22 개발계획 4차변경(사유: 산업단지 진입도로 추가반영)「광주광역시고시 제1997-129호」
- 2001. 12. 24 2차단지 1공구 실시설계 승인「광주광역시고시 제2001-179호」
- 2004. 7. 23 개발계획 5차변경(사유: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으로 면적 감소)「광주광역시고시 제2004-74호」

○ 2006. 5. 10	개발계획 6차 및 2차(2:3공구)실시계획 승인고시(시유: 외국인투자지역 제척)
	「광주광역시고시 제2006-75호」
○ 2006. 7. 15	2차(2·3공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사유 : 유치업종 변경(섬유제품추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6-107호」
O 2006. 12. 28	평동 2차(23공구) 공사 착공
○ 2010. 11. 1	평동 2차(2:3공구) 공사 준공
○ 2011. 3. 4	평동 2차(2·3공구)내 외투 확대지정(131,580.7㎡)
	「광주광역시고시 제2011-20호」/중복지정
O 2013. 5. 15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1,366,276.6㎡-전체면적임)
	「광주광역시고시 제2013-71호」
O 2013. 5. 15	평동 일반산업단지내 월전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99,
	060.3㎡)/ 중복지정
	「광주광역시고시 제2013-72호」
O 2013. 5. 24	평동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평동외투지역해지에 따른 산업단지로 면적 편입「광주광역시고시 제201
	3-78호」
○ 2015. 10. 30	평동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광주광역시고시 제2015-169호」
O 2015. 11. 15	평동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광주광역시고시 제2015-183호」
○ 2017. 11. 28	평동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평동2차 일반산업단지(2・3공
	구)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변경)
	「광주광역시고시 제2017-242호」
O 2018. 3. 15	평동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주광역시고시 제2017-242호 고시에 대한 지형 고시
	「광주광역시고시 제2018-52호」
O 2019. 3. 21	평동2차 일반산업단지(2・3공구)실시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 고시
	토지이용계획(변경) 「광주광역시고시 제2019-52호」
O 2019. 8. 27	평동 일반산업단지(2차)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변경)

「광주광역시고시 제2019-214호」

○ 2019. 11. 29 평동2차 일반산업단지(2·3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고시

조스 키미기보레히 드(버커)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변경)

「광주광역시고시 제2019-296호」

○ 2020. 7. 1 평동2차 일반산업단지(2·3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 고시

토지이용계획(변경)

「광주광역시고시 제2020-263호」

○ 2020. 10. 29평동일반산업단지(1·2차)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고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광주광역시고시 제2020-444호」

○ 2021. 9. 14 평동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평동산단1번로 97, ㈜삼광개발)

「광주광역시고시 제2021-345호」

○ 2021. 10. 25 평동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광주광역시고시 제2021-384호」

○ 2021. 12. 8 평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주요기반시설계획(폐기물 처리계획)(변경)

「광주광역시고시 제2021-445호」

○ 2022. 4. 13 평동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정정 고시

「광주광역시고시 제2022-98호」

다. 조성현황

(단위: m²)

									(단위: m)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 구 역	지원 시설 구역	공공시설 구 역	주거 구역	공원, 녹지 구역	복합구역	비 고 (산단 내 외투면적)
계		4,950,849.3	3,273,635.2	85,369.0	964,386.2	62,114.5	548,438.0	16,906.4	99,060.3
1차단지		2,710,827.5	1,853,147.7	27,144.3	479,155.6	18,340.6	316,132.9	16,906.4	16,446.4
2차 단지	소계	2,240,021.8	1,420,487.5	58,224.7	485,230.6	43,773.9	232,305.1	-	82,613.9
	1공구	568,004.3	397,408.5	6,496.1	93,212.9	-	70,886.8	_	36,322.3
	2:3공구	1,672,017.5	1,023,079.0	51,728.6	392,017.7	43,773.9	161,418.3	_	46,291.6

2. 관리기본 계획

가. 관리권자 : 광주광역시장

나. 관리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다. 관리기본방향

-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관리의 능률화 도모
- 직·가접 경비를 절감하여 입주업체 부담 경감
- 연차별 기능인력 수급계획에 의한 고용창출 및 생산성 제고
- 산업단지의 지원사업은 입주업체의 의견을 수렴, 우선순위를 결정 년차별 집행계 획 수립 시행

라. 입주 및 사후관리

- 1) 입주대상 업종
- 전자, 기계, 화학, 음식료품 등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 및 사업
 - 보관·창고업: 일반창고업(52101), 냉장 및 냉동창고업(52102), 기타 보관 및 창고업(52109)
 - 운송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4930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4930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49303), 택배업(49401)
 - 물류업종 입주 총량범위는 당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면적의 9% 이내로 하되, 산업단지 내 물류업 입주면적은 총량범위에 포함 한다.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2) 입주제한 업종

- 도축업(1011)
- 모피 및 가죽 제조업(15110)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20119)
-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20129)
-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
-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 고무제품 제조업(221)
-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2323),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 공해, 용수 등 기타 사정으로 특정업종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3) 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 2조 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동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입주 총량 범위내)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지원시설구역 입주자격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 산업집적법 제2조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

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

○ 기타 입주대상 산업 및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입주기업체 근로자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5) 복합구역 입주자격

○ 라. "입주 및 사후관리"에서 1)입주대상 업종, 3)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 4)지원시설구역 입주자격에 적합한 기업체

6) 입주절차

○ 산업집적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계획

- 산업집적법 및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광주광역시 하수 도 사용 조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소장, 광산사업소장 : 상수도
 - 광주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 도로의 폭이 20m이상인 도로
 - 광산구청장
 - ·도로의 폭이 20m미만인 도로 및 전체도로의 부속물
 - · 우·오수시설, 가로등 및 가로수, 주차장, 보도 등
 - · 공원 및 녹지(시설물 포함)

마.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m². %)

총 면 적	산업시설 구 역	지원시설 구 역	공공시설 구 역	녹지 구역	복합 구역	기타 (주거 구역)	비고 (산단 내 외투면적)
4,950,849.3	3,273,635.2	85,369.0	964,386.2	548,438.0	16,906.4	62,114.5	99,060.3
100.0	66.1	1.7	19.5	11.1	0.3	1.3	중복지정

2) 용도구역별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공장시설용도) (변경)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 물류업(보관·창고업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
- 산업시설 구역(공장시설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용도 복합용도)
 - 2013.5.15. 해지된 평동 외국인투자지역에 포함된 산업용지 한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산집법 제 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만 해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4항 제2호(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및 제3호(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만 해당

○ 복합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시설

바.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 면적

○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산업용지 분할 등) 및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 기준 등) 제2항 규정에서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같은법 제1 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산집법 제3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인 1천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